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56조의 규정(작업발판의 구조)에 따라 교량공사의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조립, 해체 및 작업 중 안전에 관한 대책 등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교량공사의 슬래브거푸집 해체 시 사용되는 작업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작업대차"라 함은 교량의 슬래브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한 이동식 비계 로서, 교량상판 또는 교량상판에 부착된 주행레일을 주행하면서 전체 작업 대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춘 작업대를 말하며 작업대차의 종류에는 절곡 형 작업대차, 양단 지지형 작업대차, 캔틸레버 슬래브형 작업대차가 있다.
 - (나) "절곡형 작업대차"라 함은 'ㄷ' 자 형태의 작업대차로 상·하부 구조물이 한쪽 방향에서 수직부재에 연결된 작업대차로서 하부 구조물을 90° 회전시 켜 교각을 통과할 수 있어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<그림 1>과 같은 형태의 작업대차를 말한다.